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의11서식] <신설 2014.7.17>

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·의무 승계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5일

승계를 하는 사람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상호(명 칭)	전화번호
	주소	
승계를 받는 사람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상호(명 칭)	전화번호
	주소	
승계내용	인증번호	
	사육시설 소재지	사육시설 : 동 ㎡
		사육규모 : (뒷면에 작성)
승계사유	[ ] 양수 [ ] 상속 [ ] 기타( )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11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자의 권리·의무승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

첨부서류	1.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(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, 개선명령을 이행중인 경우는 이행경과를 제출합니다) 3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양도·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·양수계약서,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·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교부
신고인		유역(지방)환경청		유역(지방)환경청		유역(지방)환경청		유역(지방)환경청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권리·의무 승계내역						
순번	국제적 멸종위기종		개체수	시설규모 (동)	시설면적 (㎡)	담당자 확인
	보통명	학명				